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 경위

가. 발 의 자 : 장홍순 의원외 28명

나. 의안번호 : 제176호

다. 발의일자 : 2014. 11. 7.

라. 회부일자 : 2014. 11. 11.

2. 제안 사유

○ 현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량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시기 이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가 예견된 상황에 있어 서울시 자체 처리시설에서 전량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통한 감량노력이 절박한 상황임.

○ 현재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해 징수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톤당 반입수수료는 반입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입량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.

○ 본 개정안은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양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차등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임.

3. 주요 내용

가.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감면 또는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(안 제3조제2항)

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5. 검토의견

가. 개요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감량목표를 할당하고,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.

나. 검토의견

○ 서울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을 발생단계부터 줄이고, 재활용률을 높여 쓰레기 발생량을 20% 감축하고, 생활폐기물을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

(단위 : 톤/일)

구 분	'12년말		'15년말		'16년말		'17년말
직매립량	719	➡	400	➡	119	➡	0
시설용량[1] 확 충	3,048		3,300		3,300		3,750
재 활 용	2,704		3,004		3,304		3,394

○ 이를 위해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감량목표를 정해 주고, 그 목표를 달성할 경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감

1) 마포· 강남 자원회수시설의 성능개선을 통한 시설용량(150톤/일) 확보, 수도권 지자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(250톤/일), 강남자원회수시설내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(300톤/일) 등.

면해주고, 달성하지 못한 경우는 반입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「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」를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임.

○ 본 조례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를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관 계 법 령

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

제8조(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)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(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산금(加算金)을 징수할 수 있다.